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00 발의연월일: 2023. 5. 15.

발 의 자: 김희곤 · 김형동 · 이명수

박대수 · 최춘식 · 김상훈

구자근 · 서범수 · 황보승희

윤창현 · 정희용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하여금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현금·주식·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의 보유자 및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 목록에는 제외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부당한 재산 증식 또는 재산 은닉의 도구로 활용될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타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100590호),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 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제2107702호),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의안 번호 제2109935호),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0190호), 양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0312호), 강민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제2110447호),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1459호), 민형배의원이 대 표발의한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안번호 제2111771호), 배진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860호). 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특 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번호 제2112119호). 윤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안」(의안번호 제2113016호),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 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3071호). 김은혜의원이 대표발 의한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제2113168호),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거래법안」(의안번호 제2116464호), 윤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7994호), 윤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8001호),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8204호),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20672호),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216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제6조의5제1항 전단 중 "신용정보회사등"을 "신용정보회사등,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 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생 략)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	2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	3
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	
識財産權)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u><신 설></u>	<u>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u>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가상자산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	
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	
서 "재산등록·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 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 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 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 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5조에 따른 신용정 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 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 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 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 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u>신용정보회사</u> -
<u>신용정보회사</u>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 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 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 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i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